

의안번호	제 638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4년 3월 31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38
----------	-----

제출연월일 : 2014. 3. 3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학생 야영·수련 시설 운영의 내실화와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으로 통합하고,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하부조직 중 보령교육원 및 제주교육원을 직속기관으로 분리하는 한편,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기구를 삭제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한시기구 중 존속기한(2014.2.28.까지)이 도래한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삭제함(안 제6조제2항)
- 나.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위치와 원장의 업무를 변경함(안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3호)
 - 1)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위치 중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17’을 삭제하고,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학생야영장의 위치와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를 추가함
 - 2) 원장의 업무로 “교직원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다.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의 하부조직 중 ‘보령교육원’과 ‘제주교육원’을 분리하여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과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을 설치함(안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 1) 설치 목적 및 위치, 원장의 업무를 정함

- 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학생야영장을 삭제함(안 제47조, 제50조, 별표4)
- 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41조)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5호,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28조제3호, 제29조, 제32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7조, 제48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13. 12. 27. ~ 2014. 1. 2.):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에 따라”로 하고,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를 “필요한 사항을”로 한다.

제2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규칙”을 “교육규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및 제4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학교폭력예방대책과 및 방과후학교지원단”을 “방과후학교지원단”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하고, “정립하기 위하여”를 “정립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17”을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진여울길 65,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충청북

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평도원로 153-3,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로 한다.

제2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직원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29조제1항 중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4조에 따라”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6조를 제47조부터 제52조로 한다.

제12절(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절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

제41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련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이하 "보령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령교육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17에 둔다.

제42조(원장) 보령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3조(업무) 보령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단체 단원들의 해양수련활동
3. 교직원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13절(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절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

제4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이하 “제주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주교육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지9길 57에 둔다.

제45조(원장) 제주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6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 체험활동 및 전지훈련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3. 교직원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제4장의 제목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47조(종전의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교직원복지회관, 영어체험센터를 둔다.

제50조(종전의 제4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48조제2항(종전의 제42조제2항), 제49조제2항(종전의 제43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종전의 제45조제2항) 중 “통할”을 각각 “총괄”로 한다.

제19조제5호 및 제28조제3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 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영동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영동학생야영장)”으로, “제천학생야영장”을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제천학생야영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및 <u>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u> 충청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u>지역교육청 소속기관</u>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u>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u>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제12조에 따라</u> ----- ----- -----<u>교육지원청 소</u> <u>속기관</u>----- <u>필요한 사항을</u> ----- -----.</p>
<p>제2조(보조·보좌기관 등 직급) 다음 각 호의 직급은 <u>규칙</u>으로 정한다.</p> <p>1. (생략)</p> <p>2. <u>지역교육청</u>의 국장, 과장</p> <p>3. 직속기관과 <u>지역교육청 소속기관</u>의 장 및 보조기관</p>	<p>제2조(보조·보좌기관 등 직급) ----- 각 호-----<u>교육규칙</u>-----.</p> <p>1. (현행과 같음)</p> <p>2. <u>교육지원청</u>의 국장, 과장</p> <p>3. ----- <u>교육지원청 소속기관</u> -----</p>
<p>제4조(<u>지역교육청</u> 하부조직의 설치 등) <u>지역교육청</u>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u>교육규칙</u>으로 정한다.</p>	<p>제4조(<u>교육지원청</u> 하부조직의 설치 등) <u>교육지원청</u> ----- ----- -----.</p>

현행	개정안
<p>제6조(교육국) ① (생략)</p> <p>② <u>학교폭력예방대책과 및 방과후 학교지원단</u>은 한시기구로 하며, 기구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교육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방과후학교지원단</u>----- ----- ----- -----.</p>
<p>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u>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u> 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조사하고, 교육현장 지도와 진로지도, 교육자료를 개발하며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학생의 탐구학습 및 교원의 연구활동을 조장·지원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8조(설치) ① ----- ----- <u>제32조에 따라</u> ----- ----- -----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u>통할</u>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9조(원장) ----- ----- ----- ----- <u>-총괄-</u>----- -----.</p>
<p>제11조(설치) ① 법 <u>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u>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p>	<p>제11조(설치) ① -----<u>제32조에 따라</u>----- -----</p>

현행	개정안
<p>자질향상과 투철한 교직원을 확립, 국민교육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u>통할</u>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2조(원장) ----- ----- -----<u>총괄</u>----- -----.</p>
<p>제14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u>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u>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14조(설치) ① ----- -----<u>제27조에 따라</u>-----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u>통할</u>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5조(관장) ----- ----- -----<u>총괄</u>----- -----.</p>
<p>제17조(설치) ① 법 <u>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u> 교양증진, 소질계발, 정서 순</p>	<p>제17조(설치) ① -----<u>제32조에 따라</u>----- -----</p>

현행	개정안
<p>화 등 감성교육에 기여하고, 다양한 체험학습과 미래 첨단산업인 바이오 교육을 통하여 창의적인 학생교육문화를 창달하고자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이하 "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 -----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8조(원장) 학생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u>통할</u>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18조(원장) ----- ----- -----<u>총괄</u>----- -----.</p>
<p>제19조(업무) 학생교육문화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제19조(업무) ----- -----.</p>
<p>1. ~ 4. (생략)</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기타</u> 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5. <u>그 밖에</u> ----- -----</p>
<p>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청소년기본법」 <u>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u>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u>정립하기 위하여</u>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p>	<p>제20조(설치) ① ----- -----<u>제26조에 따라</u>----- ----- ----- -----<u>정립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u>-----</p>

현행	개정안
<p>을 설치한다.</p> <p>② 수련원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1에 둔다. 다만, 수련원의 일부는 <u>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17</u>에 둔다.</p> <p>제21조(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u>통할</u>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22조(업무) 수련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2. (생략)</p> <p><u>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와 수련활동</u></p> <p>제23조(설치) ① 법 <u>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u> 초·중등 학생 및 교원들에게</p>	<p>-----.</p> <p>② -----</p> <p>-----<u>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진여울길 65,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평도원로 153-3,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쌍곡로 515</u>-----.</p> <p>제21조(원장) -----</p> <p>-----</p> <p><u>-총괄-</u>-----</p> <p>-----.</p> <p>제22조(업무) -----</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u>3. 교직원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u></p> <p>제23조(설치) ① -----<u>제32조에 따라</u>-----</p> <p>-----</p>

현행	개정안
<p>체험활동 중심의 외국어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여, 국제문화 이해 능력 증진, 개인별 국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 외국어교육의 효율성 확보로 충북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이하 "외국어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 ----- ----- -----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원장) 외국어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u>통할</u>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24조(원장) ----- ----- -----<u>총괄</u>----- -----.</p>
<p>제26조(설치) ① <u>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u>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등"이라 한다)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 기자재의 실습을 통하여 교수·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응</p>	<p>제26조(설치) ① -----<u>제32조에 따라</u>----- ----- ----- ----- ----- ----- ----- ----- ----- -----</p>

현행	개정안
<p>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 특성화고등학교등공동실습소(이하 "공동실습소"라 한다)를 둔다.</p>	<p>-----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7조(소장) 공동실습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u>통할</u>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27조(소장) ----- ----- -----<u>총괄</u>----- -----.</p>
<p>제28조(업무) 공동실습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제28조(업무) ----- -----.</p>
<p>1. · 2. (생략)</p> <p>3. <u>기타</u>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그 밖에</u> ----- -----</p>
<p>제29조(설치) ① 법 제32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및 <u>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u>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체험활동에 바탕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이하 "청명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29조(설치) ① ----- -----<u>제54조에</u> <u>따라</u> ----- ----- ----- ----- -----.</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제32조(설치) ① 법 <u>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u> 교원의 정보화 연수,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과 활용 지원, 이러닝 지원 체제의 구축·운영 및 행정 정보 전산화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2조(설치) ① -----<u>제32조에 따라</u>----- ----- ----- ----- ----- ----- -----.</p>
<p>② (생략)</p> <p>제35조(설치) ① 법 <u>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u>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 등 전인교육에 기여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특별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건전한 인격체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과 주민의 평생교육·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충주학생회관(이하 "충주학생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5조(설치) ① -----<u>제32조에 따라</u>----- ----- ----- ----- ----- ----- ----- ----- -----.</p>
<p>② (생략)</p> <p><u><신설></u></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2절 충청북도교육정보령교육원</u></p> <p><u>제41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청소</u></p>

현행	개정안
	<p><u>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련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을 신장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애국애족하는 학생상을 정립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보령교육원(이하 "보령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u>② 보령교육원은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3길 14-17에 둔다.</u></p> <p><u>제42조(원장) 보령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p> <p><u>제43조(업무) 보령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각급학교 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 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u>2. 청소년 단체 단원들의 해양수련 활동</u> <u>3. 교직원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u>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3절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u></p> <p><u>제44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교직원</u> <u>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제주교육원</u> <u>(이하 “제주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u>② 제주교육원은 제주특별자치도</u> <u>제주시 애월읍 광지9길 57에 둔다.</u></p> <p><u>제45조(원장) 제주교육원에 원장을 두</u> <u>며,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u> <u>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u> <u>지휘·감독한다.</u></p> <p><u>제46조(업무)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u> <u>항을 관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학생 체험활동 및 전지훈련을 위</u> <u>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u> <u>2. 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u> <u>보급</u> <u>3. 교직원 연수 및 후생·복지에 관</u> <u>한 사항</u>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u>지역교육청 소속기관</u></p> <p><u>제41조(설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야영장, 교직원복지회관, 영어체험센터를 둔다.</u></p> <p><u>제42조(도서관) ① (생략)</u></p> <p>②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③ · ④ (생략)</p> <p><u>제43조(학생회관) ① (생략)</u></p> <p>② 학생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③ (생략)</p> <p><u>제44조(학생야영장) ① 학생들로 하여금 대자연과 접하게 하여 정서를 순화시키고 진취적 기상과 의욕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야영장을</u></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u>교육지원청 소속기관</u></p> <p><u>제47조(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교직원복지회관, 영어체험센터를 둔다.</u></p> <p><u>제48조(도서관) ① (현행과 같음)</u></p> <p>② ----- ----- -총괄-----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u>제49조(학생회관) ① (현행과 같음)</u></p> <p>② ----- ----- -총괄----- -----</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50조 <삭제></u></p>

현행	개정안
<p>둔다.</p> <p>② <u>학생야영장에 장장을 두며, 장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p> <p>③ <u>학생야영장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 4】와 같다.</u></p> <p><u>제45조</u>(교직원복지회관) ① (생략)</p> <p>② 교직원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u>통할</u>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③ (생략)</p> <p><u>제46조</u>(영어체험센터) (생략)</p>	<p><u>제51조</u>(교직원복지회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총괄</u>----- -----.</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52조</u>(영어체험센터) (현행 제46조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별표 4]</p> <p>학생야영장의 명칭과 위치(제44조 관련)</p>		<p><u><삭 제></u></p>
명 칭	위 치	
중원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진여울길 65	
제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옥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영동학생야영장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청천학생야영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후평도원로 153-3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구성) ① (생 략)</p> <p>② ----- <u>교수학습지</u> <u>원과장</u>-----.</p> <p>③ · ④ (생 략)</p>	<p>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중등교육과</u> <u>장</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별표]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 구분표(제2조 관련)			
등급	시·군	구, 읍·면·동, 리	기관명	등급	시·군	구, 읍·면·동, 리	기관명
가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영동학생야영장	가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영동학생야영장)
나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	나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수정초등학교삼가분교장
다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제천학생야영장	다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충청북도학생종합수련원 (제천학생야영장)
		가곡면 보발리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가곡면 보발리	가곡초등학교보발분교장
		단성면 가산리	단천초등학교가산분교장			단성면 가산리	단천초등학교가산분교장
		대강면 장정리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			대강면 장정리	대강초등학교장정분교장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2014.2.13.] [법률 제12394호, 2014.2.13.]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89호, 2013.12.4.]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